

우편요금후납 이용계약서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편요금후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_____우체국장과 _____(이하 '이용자'라고 함)의 우편요금후납 이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제1조(이용자 주소와 우편물 이용 명세) 우편요금후납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이 용 자 성 명 · 주 소	(☎:)		
발 송 우 체 국 명		1개월간 발송 예정 물량	
요금 납 부 방법	현금() 신용카드()	담 보 금	

제2조(변경사항 신고) 이용자는 우편요금후납을 이용하며 다음의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5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성명, 회사명
2. 발송예정통수의 변동
3. 요금납부 방법 변경
4. 사용자 서명표 변경

제3조(계약의 일시정지)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우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체납 요금 등이 담보금을 초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납부 독촉을 받고도 1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고시에 따른 담보금 면제자는 납부 독촉을 받고도 1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 이용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즉시 계약을 이행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해당 우체국장은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송하는 우편물의 양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4개월 이상 월 100통에 미달한 때
2. 우편요금 등의 납부를 최근 1년간 3회 이상 게을리 할 때
3. 담보금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5조(계약 해지 후 재계약의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담보금 제공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경과기간 전이어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어느 한쪽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7조(담보금 제공 및 요금 등의 납부) ① 이용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의 2에 따라 1개월분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 정한 경우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경우 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요금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반드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결제명세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우편 서비스 계약과의 관계) ① 별도로 맺은 우편 서비스 계약에서 다른 사항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금후납과 관계된 사항은 이 계약을 따른다.

② 우편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우편요금 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한 우편금액 등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우편요금 등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 및 취급조건은 우편법령과 고시 등에 따른다.

제9조(전자우편의 이용) 이용자는 전자우편을 의뢰할 때는 해당 우체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송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이용자는 전자우편을 의뢰할 때 발송정보를 보조기억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창구에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한다.
2. 「발송정보」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과 발송 내용문을 말한다.
3. 해당 우체국장은 이용자가 제출한 발송정보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제작한다.

제10조(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우체국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과 효력)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은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해당 우체국장과 이용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_____우체국장 (인)

_____ (인)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서

○○○사(이하 "○○○사" 라 한다) 와(과) □□우체국(이하 "□□우체국" 이라 한다) 간에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이(가) 택배물품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 ① "○○○사"와(과) "□□우체국"은(는) 우체국택배 이용 계약기간을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29일(1년)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소 이용물량 미달 및 제20조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관서와 이용업체간 한쪽이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에 한하여 자동연장 할 수 있다.
- * 단, 소포요금 인상이 있는 경우와 한시적·1년미만 발송계약은 자동연장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조(접수물품 및 수집)

- ① "○○○사"와(과) "□□우체국"은(는) 접수물품, 택배 집하시간 및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접수물품 : 농/수/축산물(일반)
 2. 집하시간 : 12:00
 3. 집하장소 : 테스트
- ② 반품 및 맞교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이(가) "□□우체국"에 집하를 요청한 날의 그 다음 날 까지 집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송달근란지역으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방문접수 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계약물량 및 계약택배 요금)

"○○○사"와(과) "□□우체국"은(는) 계약물량 및 계약택배 요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 발송 예상물량(계약물량) : 100통 이상
2. 계약요금(부가가치세 포함)
 - 가. 적용방법
 - 월 발송 예상물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초 3개월 적용(현저히 차이나는 경우에는 요금 조정), 이후부터는 실제 발송물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
 - ※ 적용기간(3·6·12개월 단위)에 따른 상세 내용은 제5호(계약요금 적용기간)참조
 - 발송물량과 관련이 있는 감액(신규·장기감액·초소형)은 계약물량에 미달할 경우 감액이 불가하며 계약요금 적용방법과 동일하게 조정·변경
 - 나. 계약자(계약업체) 부담요금

월 발송물량	규격별 계약요금				
	60cm 이하 (2kg 이하)	80cm 이하 (5kg 이하)	120cm 이하 (10kg 이하)	140cm 이하 (20kg 이하)	160cm 이하 (30kg 이하)
100통 이상					
300통 이상					
500통 이상					
1,000통 이상					
3,000통 이상					
5,000통 이상					
7,000통 이상					
10,000통 이상					
20,000통 이상					
30,000통 이상					
50,000통 이상					
100,000통 이상					

다. 수취인 부담요금 : 반품·맞교환 발송 등에 따라 수취인(물품 주문자)이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착불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

계약자(계약업체) 월 발송물량	규격별 계약요금				
	60cm 이하 (2kg 이하)	80cm 이하 (5kg 이하)	120cm 이하 (10kg 이하)	140cm 이하 (20kg 이하)	160cm 이하 (30kg 이하)
100통 이상					
300통 이상					
500통 이상					
1,000통 이상					
3,000통 이상					
5,000통 이상					
7,000통 이상					
10,000통 이상					
20,000통 이상					
30,000통 이상					
50,000통 이상					
100,000통 이상					

3. 평균요금 적용여부 : 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작성

o 규격별 물량 점유비(평균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작성)

구 분	60cm 이하 (2kg 이하)	80cm 이하 (5kg 이하)	120cm 이하 (10kg 이하)	140cm 이하 (20kg 이하)	160cm 이하 (30kg 이하)
발송수량	0	0	0	0	0
점유비	0 %	0 %	0 %	0 %	0 %

4. 추가감액내역(해당사항만 작성) : 계약기간동안 변경 불가

- o 발송물량과 관련이 있는 감액(신규·장기·초소형)은 계약물량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액이 불가하며 계약요금 적용방법과 동일하게 조정·변경
 - 단, 계약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물량에 해당하는 감액요금 적용
 - 우체국 정보시스템 이용 : 200원

o 추가감액 한도액

- 1년 미만 : 500원
- 1년 이상 : 550원
- 3년 이상 : 600원

5. 계약요금 적용기간

가. 연간계약 : 3개월

- o 신규계약(계약 후 1년 이내) : 3·6개월 단위 중 선택 가능. 단, 최초 3개월은 계약물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고 6개월 단위를 선택해도 실제 발송실적이 있어야 적용 가능
- o 재계약(1년 초과) : 3·6·12개월 단위 중 선택

나. 1년 미만 계약

- o 신규계약 : 매 분기말(3·6·9·12월) 월평균 발송물량 산정 후 요금 조정
- o 재계약 : 직전 계약기간 중 실제 발송기간의 월평균 발송물량을 산정하여 요금 적용

6. 부가서비스 이용수수료(해당사항만 작성)

- 가. 당일특급 : 기본수수료 2,000원, KTX·항공운송 구간(제주지역 제외)인 경우 3,000원 추가
- 나. 제주익일배달 할증요금 : 2,000원(* 익일배달우편물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한하여 접수(읍·면지역 및 제주지방우정청장이 송달곤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제외)
- 다. 착불수수료 : 500원
- 라. 안심소포 : 1,000원 + 손해배상 한도액 초과 매 10만원마다 500원
- 마. 상품수납 대행 서비스 : 1,000원
- 바. LMS문자전송서비스 : 건당 50원 이상

제5조(계약요금의 적용 및 산정방법)

- ① 계약요금의 적용기간 및 방법은 연간 계약과 1년 미만 발송계약으로 구분·적용하며 연간 계약은 고객이 적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발송계약은 계약기간에 따라 일괄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계약에 따른 기간별 요금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간 계약

- 가. 3개월 단위 적용 : 계약 후 최초 3개월간은 계약한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 다음 3개월간은 최초 3개월간 실제 발송한 월평균 물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다음 요금산정기간 시작 월의 21일부터 적용한다. 그 이후부터는 최근 3개월간 발송한 월평균 물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3개월 단위의 계약요금 적용예시>

계약한(발송하기로 한)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1월~3월까지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4월~6월까지의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이후부터 동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약일(1.1.로 가정)			4.21.(요금 변경적용일)			7.21.(요금변경 적용일)		

- 나. 6개월 단위 적용 : 계약 후 최초 3개월간은 계약한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 다음 3개월간은 최초 3개월간 실제 발송한 월평균 물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다음 요금산정기간 시작월의 21일부터 적용한다. 그 이후부터는 최근 6개월간 발송한 월평균 물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6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6개월 단위의 계약요금 적용예시>

계약한(발송하기로 한)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1월~3월까지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1월~6월까지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적용(이후부터 동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일(1.1.로 가정)			4.21.(요금 변경적용일)			7.21.(요금변경 적용일)					

- 다. 12개월 단위 적용(최근 1년 이상 유지한 고객만 가능) : 최근 12개월간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한 요금을 12개월간 적용하되 6개월마다 최근 6개월간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조정(물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할 수 있다.

<12개월 단위의 계약요금 적용예시①>

최근12개월간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1월~6월까지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조정						최근 12개월간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이후부터 동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재계약일(1.1.)						7.21.(최근 6개월 기준 물량산정)						1.21.(요금변경 적용일)		

<12개월 단위의 계약요금 적용예시②>

최근 12개월간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2월 ~ 7월까지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조정					최근 12개월간 발송한 월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이후부터 동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재계약일 1.25인 경우, 2.21부터 요금변경							8.21.(최근 6개월 기준 물량산정)					2.21.(요금변경 적용일)		

2. 1년 미만 발송계약

가. 신규 계약(최초 계약 후 1년까지) : 매 분기(3·6·9·12월)말 기준, 3개월마다 실제 발송물량을 산정하여 새로운 요금을 익월(4·7·10월·1월) 21일부터 적용.

단, 최초 계약일과 해당 분기말까지의 개월 수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요금을 재산정하고 그 기간까지는 계약물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

<예시1> 계약일이 2월2일인 경우, 3월말까지가 2개월 미만이므로 다음 분기(6월)말을 기준으로, 3~6월 중 발송물량이 있는 달의 월 수로 나뉘서 월 평균 물량 산출

<예시2> 비연속 사용으로 인해 직전 분기에 발송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발송실적으로 요금 적용

나. 재계약 : 직전 계약기간 중 실제 발송기간의 월 평균 발송물량을 산정하여 해당요금을 1년 동안 적용하되 새로운 요금은 계약일이 1일인 경우는 계약일의 21일부터, 2일 이후인 경우는 계약일 다음달의 21일부터 적용

<예시> 최초 계약일이 '16.2.1.의 재계약 시 요금변경 적용은 '17. 2. 21.~'18. 2.20.

최초 계약일이 '16.2.2.의 재계약 시 요금변경 적용은 '17. 3. 21.~'18. 3.20.

<실제 발송기간이 단기간 연속인 경우 적용예시>

실제발송기간 (계약한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적용)												전년도 실제 발송기간(1월~3월)의 월평균 발송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이후에도 동일반산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약일(1.1.로 가정)												재계약일(1.1), 요금변경일(1.21)		

<실제 발송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 적용예시①>

실제발송기간 (계약한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적용)	발송 중지기간	실제발송기간	- 발송중지기간 - 직전 발송기간(4월~5월)까지의 월평균 발송물량을 기준으로 요금 적용									전년도 실제 발송기간(1월,2월,4월,5월)의 월평균 발송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이후에도 동일반산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약일(1.1.로 가정)			4.21.(변경된 요금적용일)									재계약일(1.1), 요금변경일(1.21)		

<실제 발송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 적용예시②>

실제발송기간(㉠)	발송 중지기간	실제발송기간(㉡)	- 발송중지기간 -									실제발송기간(㉢)	- 발송중지기간 -		전년도 실제 발송기간(1월,2월,4월,5월,9월)의 월평균 발송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이후부터 동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계약일(1.1.로 가정)															재계약일(1.1), 요금변경일(1.21)		

㉠ 계약한(발송하기로 한)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직전 분기(1~3월)의 실제 발송기간(1월, 2월)의 월평균 발송물량을 기준으로 4.21.~7.20. 적용

㉢ 직전 분기(4~6월)의 실제 발송기간(4월, 5월)의 월평균 발송물량을 기준으로 7.21.~10.20. 적용

③ 제2항제1호의 가목(3개월 단위) 및 나목(6개월 단위)의 최초 3개월의 기간 산정은 월 단위로 하되 계약일이 월의 1일인 경우는 당월부터, 월의 2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부터 산입한다.

* <예시> 연간계약으로 계약일이 1.2일 경우(3개월 단위 요금 적용기간)

1.2(계약일)			5.21.(최초 요금변경일)			8.21.(요금변경일)			11.21.(요금변경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계약 시 발송하기로 한 월 평균 물량 기준으로 적용			2월~4월까지의 월 평균 발송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5월~7월까지의 월 평균 발송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이후부터 동일)			...		

④ 제2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계약요금 적용기간(3·6·12개월)의 변경은 재계약시에만 가능하다.

⑤ 계약요금의 적용을 위한 월 평균물량은 우체국택배 물류시스템의 통계를 적용하되, 월평균 300통 이상부터는 반품 및 맞교환 물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우체국장”은 적용할 계약택배 요금을 해당 월의 15일까지 “○○○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새로운 요금은 같은 달 21일부터 다음 요금산정기간 시작 월 20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계약우편관서의 변경)

① “○○○사”은(는) 사업장 이전 등에 따라 계약우편관서를 변경하여 계약택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우체국”에 “우체국택배 계약우편관서 변경(전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실제 전출일은 “○○○사”이(가) “□□우체국”에 고지한 전출일자를 기준으로 전입 2일전까지 변경된 집하장소 등을 반영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은 변경 전 계약우편관서에서 계약한 계약만료일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사”이(가) 특별한 이유없이 전출일 이후 10일 이상(영업일 기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출·입 처리절차>		
① 변경 신청 계약자(계약업체) →계약우편관서 전출 7일 전까지	② 전출 통보 • 전출국→전입국(문서) • 전출 등록(PostNet) 전출 5일 전까지	③ 전입 처리 • 계약서 작성 • 전입 등록(PostNet) 전입 2일 전까지

제7조(계약택배 규격 적용방법)

① 계약택배의 규격 적용단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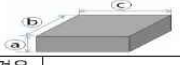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중 량	2kg 이하	~ 5kg 이하	~ 10kg 이하	~ 20kg 이하	~ 30kg 이하
크 기	(60Cm 이하)	(80Cm 이하)	(120Cm 이하)	(140Cm 이하)	(160Cm 이하)

- ② 제1항에 따른 규격은 중량 또는 크기 중 높은 단계를 적용하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으로 한다. 단,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으로 한다.

< 규격단계 적용예시 >

택배 중량 및 크기	적용규격
중량이 3kg이고 크기가 60cm인 경우	5kg이하(80cm 이하)
중량이 3kg이고 크기가 120cm인 경우	10kg이하(120cm 이하)

< 우편물의 크기 계산 방법 >

구 분	계산방법
사각형일 경우 	$(a) + (b) + (c)$
울통불통형일 경우 	$(a) + (b) + (c)$
원통형일 경우 	$2(a) + (b)$

제8조(접수제의 물품)

- ① 접수제의 물품은 우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본부장이 고시한 ‘우편금지물품’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손우려물품” 중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계약자(계약업체)로부터 ‘파손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다.
- ③ 우편금지품외에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물품의 포장 및 접수)

- ① “○○○사”은(는) 물품 포장 시 “□□우체국”이(가) 정한 중량·크기 등이 규격에 맞게 포장되되, 내용품이 파손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사각형태의 상자에 포장하고, 액체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봉하며 외부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용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 ② “○○○사”은(는) 소포 포장시 가급적 합 포장을 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합 포장을 하는 경우 소포의 개수는 2개 이내, 중량은 20kg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규격이 서로 다른 소포에 대하여는 합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은(는) 냉동·냉장택배에 대하여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하여 포장하되, 어류·조개류는 36시간 유지될 수 있는 보냉재를 내용품의 적정한 곳에 넣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 및 포장육은 진공포장 후 보냉재를 넣어 포장하여야 하며, 기타 냉동·냉장 식품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재를 강화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④ “○○○사”은(는) 냉동·냉장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냉동·냉장소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포장표면 여백에 냉동·냉장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사”은(는) “□□우체국”에게 택배접수시 규격(무게, 크기)을 정확하게 입력(기재)하여 운송장을 출력·부착하여야 한다.
- ⑥ “○○○사”이(가) 제출한 택배물품과 운송장상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우체국”이(가) “○○○사”에게 정당한 규격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은(는) 운송장의 규격을 정정하여 입력(기재)하여야 하며, “○○○사”이(가)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우체국”은(는) 택배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⑦ 다수지 발송의 경우 집하지별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개 미만인 경우 택배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제주↔육지간 택배의 취급)

- ① 제주 ↔ 육지간 운송하는 계약택배 우편물은 제주 D+2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가) 요청할 경우 제주익일배달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지에서 제주지역으로 발송하는 익일배달우편물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단, 읍·면지역 및 제주지방우정청장이 송달근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제외한다.
- ② “□□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택배우편물을 제주익일배달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6호‘나’목의 제주익일배달 할증요금(2,000원)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③ “□□우체국장”은 제주익일배달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익일배달편과 D+2편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익일배달편은 우편물의 여백에 “제주익일”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 사양 및 규격>

스티커 사양	규 격
	◇ 크기 : 5.8cm x 6.9cm (A4 용지에 12매 삽입) ◇ 재질 : 표면지 아트90g, 아크릴계 영구접착제 23g, 이형지 125g ◇ 제판 : 필름출력, 소부

제11조(크기초과 우편물의 접수)

- ① “○○○사”은(는) 크기가 160cm를 초과하는 물품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송하되, 가로·세로·높이를 합한 크기가 200cm이내(한 번의 최대 길이는 130cm 이내)까지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택배 요금은 160cm의 규격에 해당하는 감액 전 계약요금의 150%(10원 단위

: 원단위 이하 절사)를 적용한다. 단, 평균요금 계약의 경우 크기초과 소포는 평균요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중량이 30kg을 초과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규격(200cm)을 초과한 물품은 우체국택배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배달의 책임과 의무)

- ① “□□우체국”은(는) “○○○사”(의)로부터 접수한 택배를 상품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신속·정확·안전하게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 ② “○○○사”은(는) “□□우체국”이(가) 택배의 안전한 배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우편물송달기준일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6호(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한다.

제13조(착불소포 요금 및 수수료의 징수)

“○○○사”이(가) 수취인이 택배요금을 지불하도록 “착불소포”로 발송한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소포요금과 착불수수료 500원을 징수한다.

제14조(반송수수료 징수)

- ① 택배 우편물을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하여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등기통상우편물의 등기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반송료를 징수한다. 단, 연간계약자(계약업체)에 한하여 아래 각 호의 범위 내에서는 “반송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월 1,000통 미만 발송업체 : 월 발송물량의 3%
 2. 월 1,000통 이상 10,000통 미만 발송업체 : 월 발송물량의 4%
 3. 월 10,000통 이상 발송업체 : 월 발송물량의 5%

* 단,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도착하는 반송우편물은 반송료를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월 발송물량은 전월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이 포함된 첫 달은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시1> 3.1.~ 3. 31.기간 중 실제 발송물량이 11,000통일 경우, 4월에 반송우편물 중 수수료 면제물량은 최대 550통임

<예시2> 신규 계약일 3.3., 계약물량 3,000통 이상인 경우 3.3.~3.31. 기간동안 반송수수료 면제물량은 최대 120통임
- ③ 착불소포로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계약요금과 제1항에 따른 반송료를 징수한다.

제15조(반품 및 맞교환의 취급)

- ① 수취인이 “○○○사”에게 발송하는 반품우편물 및 “○○○사”이(가)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맞교환우편물을 접수 할 경우 접수요금은 계약요금으로 징수한다.
- ② 반품 또는 맞교환우편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최초 택배발송이 우체국택배가 아닌 민간 택배사를 통하여 발송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창구등기소포요금(창구접수한 경우) 또는 개별택배(방문접수한 경우)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계약택배를 반품·맞교환 요청받은 경우 개별택배 픽업 가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맞교환을 요청한 날(근무종료시간 이전)의 다음 날(영업일 기준)까지 집배원이 배달순로에 따라 방문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송달곤란지역으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방문접수 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택배 요금의 정산 및 납부)

- ① “○○○사”은(는) “□□우체국”에 계약택배 요금을 “요금즉납”으로 납부한다.
- ② 요금후납의 경우 결제 주기 및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제주기별 기준일 : 월 회
 - 가. 월1회 : 말일 기준(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요금)
 - 나. 월2회 : 15일(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요금), 말일 기준(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요금)
 - 다. 월3회 : 10일(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용요금), 20일(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이용요금), 말일(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요금)기준
 2. 납부기한 : 월 회
 - 가. 월1회 : 다음 달 20일까지(단 계약에 의하여 정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해 정한 날)
 - 나. 월2회 : 25일, 다음 달 10일까지
 - 다. 월3회 : 20일, 말일, 다음 달 10일까지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 ③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반송료 감액범위를 초과한 물량에 대한 반송료는 매월 요금후납으로 납부한다.(별도 계약체결 불요)
- ④ “○○○사”은(는) 납부기한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경우에는 우편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된 계약택배 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한 우편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우편요금 등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우편법령 개정으로 연체료 변경 시 변경된 요율 적용)

- ⑤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은(는) 반드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결제내역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후납담보금의 설정)

- ① 계약자가 요금후납을 이용할 경우에는 1개월분 예상 계약택배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결제주기가 월 2회(15일, 말일기준), 또는 3회(10일, 20일, 30일)의 경우 납부할 1월분 우편요금 예상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납부횟수로 나눈 금액을 담보로 설정한다.
- ② 우편법령이 정한 경우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신용거래 능력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8조(사고책임과 손해배상)

- ① “우체국”은 택배 취급과정에서 망실·훼손 또는 지연배달한 경우에는 우편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망실·훼손 시 손해배상
 - 가. 소포우편물 : 50만원 범위내에서 실 손해액
 - 나. 안심소포우편물 : 신고가액 범위내에서 실 손해액
 - 지연배달 손해배상 : 우편요금 및 수수료(D+3일 배달분부터)
 - ※ D : 우편물 접수일, 송달기간에는 공휴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하며,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
- ②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 등 고객의 사정으로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사”은(는) 우편관계법령에 따라 “우체국”에 손해배상 청구 할 경우에는 택배를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

제19조(계약의 일시정지)

- ① “로우체국”은(는) 우편관계법령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에 대하여 택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② 제6조에 따라 “○○○사”이(가) 계약우편관서의 변경신청 후 변경 요청관서(전입국)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은 일시정지되며 10일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 ① “○○○사”와(과) “로우체국”은(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 ② “○○○사”와(과) “로우체국”은(는)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로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와(과) 계약택배 계약을 해지한다.
-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택배 발송을 대행하는 자 또는 자체 택배 배송망을 갖춘자(민간택배사 등)로서 우체국택배 영업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 계약택배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중인 경우
 - 계약물량을 부풀려 고지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 고중량·대형소포(20kg, 140cm 초과)가 요금산정기간 중 전체 물량의 50%를 초과한 경우 또는 계약우편관서의 장과 택배 규격별 접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써 그 접수 비율을 초과한 경우
 - 계약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사”와(과) “로우체국”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상호간에 일어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재계약을 금지한다.

제21조(비밀보장)

“○○○사”와(과) “로우체국”은(는) 택배를 접수·배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22조(신용정보 활용)

“로우체국”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조회를 할 수 있다.

제23조(법령의 적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편관계법령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와(과) “로우체국”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소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 후(계인포함) “○○○사”와 (과) “□□우체국”(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0월 00일

(이용계약자)	○○○사	(우체국)	
주 소		주 소	
성명 : ○○○사 (인)		□□우체국장 (직인)	

